

經濟的 自然法則의 再認識

金 俊 輔

本稿는 경제적 自然法則의 특징을 주로 價値法則으로서 재인식하되 그것이 바로 近代的 產物로서 資本制 生産기구의 市場경제에서 주어진 필연적 존재란 것, 그에 의한 轉化의 대상인 生産價格 역시 현실적 市場에서 自生이 기대되는 自然價格으로서 市場 價値를 반영하는 母價値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市場價格에 先行한 不可測의 요인인 동시에 市場價格을 지배하는 기준적 價格=價値라는 점을 檢證한 셈이다. 그럼에도 흔히 이른바 經濟分析이란 것이 경제적 自然運動을 오인한 나머지 法則成立의 과정을 밝혀본다 하되 실은 그것의 특성을 檢證하는 작업에 급급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法則의 存立자체는 분석에 있어서 일단 전제된 조건이라는 것, 더욱 그 存立의 檢證方式에는 自然法則에 대응하는 合理性이 주어져야 마땅하다는 점이 여기에서 강조된 결론이다. 이 점은 다만 경제적 自然法則에 限定되지 않는 經驗科學 일반에 걸친 方法論의 요구이기도 하나 이른바 價値의 無用論이나 價格 '轉化問題'를 논의함에 있어서 각별한 인식의 기점이 되어 있다. 價値 그것은 정작 人間 사회와 物質의 세계를 연결시키는 自然的, 그리고 物神의 요인임에 틀림이 없으며, 본래 人爲的 소산이 아닌 까닭이다.

1. 머리말

自然法則(natural law)이라 하면 본래 自然現象에 관한 因果的 규범을 말하지만 경제학에서도 흔히 自然法則은 논의된다. 따라서 당면한 대상은 당장 兩者의 관련성부터 묻는 것일 수밖에 없다. 물론 그들 대상적 차이는 본질적임이 뚜렷하지만 기능적 接近點을 찾기가 어렵지는 않다. 사실 경제적 自然法則 역시 非人爲的 또는 個人支配的 規칙성과 더불어 현실사회의 경제적 諸現象을 규제하는 만큼 단순한 自然만이 아닌 경제적 기능에 體系化된 본질적 自然性이 부각되기 마련이다. 요는 그것이 개인의 힘을 넘는 사회의 객관적 支配力이 되겠으나 다만 그것이 정작 대표적 社會科學인 경제학적 범주의 속성이라면 어찌하여 굳이 經濟法則이란 이름을 떠나서 경제적 自然法則이라 하였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필경 특이한 제약성이 수반된다. 당장 自然 또는 自然的이라 하여도 그것은 文字 그대로 非人爲的, 非目的的인 社會현상을 뜻함에 그치지 않고, 資本制 自由市場의 合理的 運動으로 전개되는 人間의 被動的 時代性이 스스로 추출되는 속성이다. 따라서 이

에 관련하여 '마르크스'의 기본 명제로서 흔히 알려진 總價値=總價格, 또는 總剩餘價値=總利潤과 같은 통계적 等式 규정과 같은 非人爲의 경향성 역시 경제적 自然法則이라 할 수 없다. 거기에 고유한 時代性이 주어져 있지는 않은 까닭이다.

원래 自然法則과 社會法則의 차이로 말하면 바로 自然과학과 社會과학의 본성과 더불어 일찌기 論者의 이론이 구구하나 지금 本稿의 기본목적이 위와 같은 形而上學的 범주에 들어서서 用語의 개념을 定式化하려는 데 있지는 않다. 오히려 당면한 市場을 통하여 그지 현실이 요구한 경제적 自然현상의 기본적 재인식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제기된 전통적 諸問題의 解法을 合理的으로 구체화함에 力點이 두어져 있을 뿐이다. 특히 일부 經濟分析論 가운데 경제적 自然法則인 價値法則의 存立性이나 自然價格인 生産價格의 본성을 간과한 時流만은 바로 여기에서 막아야 할 비판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바야흐로 資本制 市場경제의 原則으로서 주어진 自然法則과 그것이 낳은 生産價格의 自生的 전제 없이 우선 人爲의 모델에 의한 價値의 價格化란 '轉化(形)問題'인들 正常的 解法의 기반을 세울 수 없을 것이 분명한 까닭이다.

2. 商品市場과 自然法則

資本制 生産기구의 운동을 살펴보면 일정한 形式으로서 경제主體의 활동을 규제하는 合理的 市場조건이 개별적 人間관계를 넘어서 전체적 규범으로서 관철됨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 사실 그들 內在的 운동기구를 발견하는 作業이 다음아닌 경제학의 1차적 임무이다. 그러나 그것은 흔히 그 實體를 매양 숨겨놓고 있다. 곧 본성이 內在的인 동시에 그 全體的 속성 역시 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복잡성을 가중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自然法則으로 通用된 위와 같은 개념을 좀 더 보면 社會的 범주 가운데 우선 資本制 자유市場을 떠나서 存立할 수는 없다. 그 중 勞動價値에 의하여 商品의 價格이 규정된다는 價値法則의 운동이 自由的 경쟁의 전형적 대상이다. 이것이 우선 自然科學上의 각종 法則과 달리 갖는 主體的 특성은 당장 볼 만하다. 그밖에도 市場의 價値란 숨겨진 상품의 物性성을 포함하여 資本制 生産기반으로서 주어진 歷史性이 확인된 日常的 국면이다. 그것도 특유한 人間の 交流관계 일반이 보여준 대응운동이 아닐 뿐 아니라 단순한 우연성과 혼동될 수 없다. 반면에 獨占資本制의 市場왜곡과 같은 제도적 범주를 당장 배제하지도 않는 점이 눈에 띄는 특성이다.

사실은 자연적 法則이라 하여도 대상의 본성이 社會的 虛像으로 가장된 범주는 적지 않다. 따라서 문제의 自然性과 社會性이 혼돈된 예는 흔히 보는 현상이다. '엔트로피'의 증가론이나 '말사스'의 人口法則은 그 중 유명하고 收穫遞減의 법칙 또는 限界效用遞減의 법칙과 같은 것도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다만, 그들에 관련된 物量的 外形만을 보면 경제학(社會科學)상의 규칙성을 갖는다 할 수는 있는 가운데 말하자면 自然科學上的 "경제적 自然法則"이 되어 있을 뿐이다.

社會科學이나 自然科學을 가릴 것 없이 곧 法則이라 하면 그 본성이 合理的 조건을 기반으로 한 非人爲의 규범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는 없다. 그 중 社會的 인식에는 '막스 웨버'(M. Weber)의 人間的 理解(Weber(1922))란 論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歷史性, 즉 時代的 제약성은 스스로 특징적 조건을 갖는 속성이다. 실제로 경제적 自然法則 역시 資本制 市場경제의 전형적 배경을 存立의 기초로 삼는 經驗的 범주인 만큼 그것은 유난히 近代의 自然法(law of nature)의 個人的 자유사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分配的 公平性을 天賦의 人權으로서 표방한 資本의 自由的 思潮는 名實 공히 近代의 理性的 發露이다. 따라서 구태여 말하자면 경제적 自然法則은 역사적 自然法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아담 스미스'의 이른바 自然價格 또한 바로 이 自然法思想에 起源한 近代적 개념이 되어 있을 뿐이다. '마르크스'의 '價値論' 역시 이에 뒤따른 전통적 自然法則으로서 관철된 소산이라 할 수 있거니와 그것은 예컨대 다음과 같다. 즉 "한 商品의 生産에 쓰여진 社會적 勞動의 量的 충족이 社會적 慾望의 量에 합치되고, 따라서 生産된 商品량이 일정한 需要충족의 再生産을 위한 일반적 기준에 합치된다면 商品은 그것의 市場價値 그대로 판매된다. 이와 같이 商品, 그것이 價値 그대로 교환 또는 판매된다는 것은 이들 商品이 均衡性을 갖는 合理的인 일이며, 그것이 自然的 法則이다[Marx(1894), kapt. 10]."

이 점은 당장 商品市場의 需要供給이 일치되는 均衡조건이 기본적 生産要素인 勞動이란 價値를 反證하며, 基準의 市場價値=生産價格 그것이 自然法則의 소산이란 명제를 시사한다. 바로 이러한 價値法則에 生産者(供給者)와 需要者를 다같이 만족시키는 合理性이 발휘된다는 기구성이 부각되기 마련이다. 여기에 응당 近代化한 價値法則의 기초로서 市場價格이 실현되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效率的 조건이 주어진다. 資本制 自由市場의 全體的 生産機構는 그에 대응하여 스스로 成長할 뿐이다. 이들은 결코 개별적 商品의 분석으로써 얻어지는 속성이 아니라 전체 경제의 外生的 또는 市場의 自生的 기능인 동시에 곧 內生的 調節을 필연케하는 동인이 아닐 수 없다. 즉 非人爲的 經濟法則의 속성이란

것이 중요한 인식이다. 이와 같이 하여 나타난 自然法則은 반드시 구체적 市場 조건의 형성에 한정되지 않는 가운데 관련된 요인의 競爭的 국면에서 매양 숨겨진 支配力을 발휘한다. 여기에서 구태여 『資本論』을 다시 살펴보면 이 법칙의 특징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즉

生産關係의 구체화나 개별적 生産主體의 사회적 獨立化를 해명함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예컨대 世界市場이나 景氣變動, 市場價格의 운동이나 信用期間, 産業 및 商業의 循環, 繁榮과 恐慌의 較差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관계는 그들 當事者에 대하여 압도적, 그리고 無意志의 支配力의 自然法則으로서 나타난다. 그럼으로써 그것들을 盲目的 必要性으로 이끈다. 그러나 이러한 제관계의 出現方式에 대하여는 깊이 들어가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競爭에 관한 현실적 운동은 우리들이 當面한 論述범주를 넘는 일로서 우리들은 그저 資本制 生産樣式의 대상기구로, 말하자면 理想的 平均상태에서 표시함으로써足하기 때문이다[Marx(1894), kapt. 48].

어쨌든 경제적 自然法則의 은폐된 성격은 바로 위의 引用文에 시사된 바와 같이 흔히 當事者 각 개인이 예측 또는 支配할 수 없는 必然的 결과로서 나타난다. 여기 구태여 그 形成과정을 깊이 묻는다면 資本制 生産關係 전체를 들어 총체적으로 분석하여야 마땅하나, 그것도 반드시 一定한 형태로서 因果性을 일일이 밝힌다 하되 그 正體는 쉽게 구체화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價値法則과 價格의 형성관계 역시 필경 다음과 같은 기술적 명제만이 스스로 유도된다. 즉

平衡的 市場價値로부터 출발하여 여러 偏倚(誤差)가 설명되어야 하나, 여러 偏倚로부터 法則 그 자체는 설명될 수 없다[Marx(1894), kapt. 10].

물론 문제의 偏倚라는 物量만은 統計理論上 총체적으로 加算할 때 자동적으로 소멸될 수 있다. 따라서 價値의 價格化(體化) 역시 法則的 '힌트'는 주어진다는 점, '마르크스'에서도 이미 보아 온 결론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작 진실한 價値法則의 해명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하나의 통계적 특성을 뜻할 뿐, 아직 價値法則의 自然性이 당장 그로써 확정될 수는 없는 까닭이다.

사실, 價値=價格과 같은 轉化의 自然法則이 만약 개별적 價値(體化價値)나, 市場價格의 總計一致로 설명되거나 규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自然'이란 이름을 가질 수 없다. 더욱이 資本制下 價値 그것은 분명히 非可測的(추상적)이므로 總計의 평가란 그저 推定에 쓰여질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價値라면 價格에 先行的으로 自生할 수밖에 없다. 따

과서 法則의 存立性은 당연한 市場의 外部에서 개별적 商品에 관하여 주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그렇다면 일부 論者가 굳이 그 自然法則을 떠나서 體化價値의 價格轉化機 構를 市場에서 定式化하려는 기도는 무리라 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말하자면 自然法則의 무시가 아니라면 自然에 대한 逆行的 方法의 모색일 뿐이다.

물론 경제적 自然法則 자체 因果的 關係를 떠나서 막연히 存立할 리는 없다. 더욱 그것은 경제 運動의 均衡적 所産임에 틀림이 없는 만큼, 그 자체 일단 合理的 起動力이 되어 있는 명제이다. 다만 非人爲的, 時代的 범주란 것이 그것의 본성이라면 그것을 구태여 數理的으로 밝힌다 하여도 外生變數나 常數로서 주어질 내용일 뿐 당연한 研究의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밝혀낼 수 없는 숨겨진 因果的 기구라는 것이 이 法則에서 거듭 확인되 는 특징이다.

원래 價値法則이란 勞動生産物의 交換價値의 實體를 勞動이라는 요인에 두는 만큼 그 점 우선 人間의 物化에 관련된다. 그것은 資本制下에 들어서게 되자 人間勞動 자체 商品의 生産價格이라는 社會的 市場價値로 轉化함을 뜻하고 있다. 人間 자신을 포함한 이 轉化운동 없이 資本制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에 生産價格이란 費用價格과 平均利潤으로 分解되는 價値의 基準形態이나, 市場의 각 價格 또한 自然價格인 生産價格에 대응한 社會的 市場價値를 가리키는 分化名目이다. 그 가운데 해명이 요구되는 價値法則, 즉 生産價格의 본성은 社會的 전체 經濟의 종합적 評價로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즉 그것은 필경 價値 그것이 구체적 市場價格에 先行함을 알려줄 뿐, 市場의 量的 평가는 計測이 불가능한 속성이다. 그런데 個別적 生産要素의 費用價格을 이룬 價値量의 加合방법도 문제이지만 平均利潤이란 적어도 全體經濟의 總資本에 대응한 剩餘價値의 分配에 해당한다. 그만큼 生産價格의 價値的 평가는 個別적 인식의 方法을 넘는 社會 전체적 범주로서 추상화한 市場價値로서 특징화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母數인 市場價値 = 生産價格의 전제 없이 市場이 요구한 價値法則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길은 막연하다. 이러한 自然的 現象 자체 資本制下 노동이 보여준 物神性的 객관적 物化 형태로 반영되는 “필연적” 속성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近代經濟學의 많은 論客은 우선 生産價格의 價値的 量化를 人爲的으로 造作할 수 있는 것 같이 오인하되, 이른바 轉化실현의 均衡點을 모색한다. 그 중 ‘브로트키비치(L. v. Bortkiewicz)’의 聯立方程式體系[Bortkiewicz(1949)]에 의한 ‘마크스’ 生産價格의 修正論이나 그들 體化價値의 逐次修正(iteration)에 의한 ‘價値 = 價格化’는 그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유형이다. 따라서 이들의 시도는 無爲에 그쳤을 뿐 아니라

自然法則을 떠난 不合理한 自己方式이 되고 말았음이 명백하다[金俊輔(1996)]. 이 점, 비단 단순한 轉化과정의 문제를 넘는 엄청난 方法論的 오류이다.

사실, 만약 價値의 價格轉化에 관한 必然性 자체 人爲的 해명이 가능하다면 轉化란 自然法則이 설 리도 없다. 그러한 인식은 바로 주어진 資本制 사회제도의 압도적 支配力을 무시한 처사로 돌아갈 뿐이다. 여기에 적어도 국가간 合理的 交易論의 개념인즉 正常化 할 수 없게 될 것은 당연하다. 필경 價値의 價格에 대한 본래적 先行性은 무시될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그런데 自然法則인 價値法則이 일단 전제시되는 한 價値化란 市場價格의 母數(parameter)로서 주어진 후자의 實體임이 확인된다. 주어진 상품의 市場價格은 그 母數의 推定值(estimator)로서 標本商品의 특성을 규정하게 마련이다. 이때도 그 標本值에 의한 母數의 推定이란 것이 반드시 母數의 存立을 立證하거나 하물며 正確히 확정하는 길이라 할 수 없다. 결과는 기껏해야 標本에 의한 母數의 1차적 檢證이며, 假想價値의 추정방식이 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점이 바로 '自然法則에 의하여 標本の 특성은 설명될 수 있으나 逆으로 標本에 의하여 母集團을 규정할 수 없다'는 명제를 뜻함에 틀림이 없다. 더욱 이 점, '轉化문제'를 다룬 근자의 많은 論者들이 흔히 범한 形式的 分析論의 결정적 약점이다.

資本制下 價値란 무엇보다 商品의 市場價格을 需要供給의 法則에 앞서서 규제함에 기능의 특징이 있다. 따라서 그 자체 市場價格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市場價格의 合理的 조건을 스스로 조절하는 基準尺이다. 오히려 그것은 개별적 市場의 결과와 獨立的으로 價格의 형성을 피하되 경제의 全體의 均衡을 부단히 촉구한다. 그러므로 이른바 주어진 價値는 숨겨진 가운데 "諸商品의 價値에 따른 交換이나 매매는 諸商品의 균형이 필요로 하는 合理的인 것이며, 그것의 自然法則이다[Marx(1894), kapt. 10]."

3. 本來的 自然法則의 修正

일단 경제적 自然法則이라 하면 非人爲的 범주로서 실로 資本制 경제의 전체적 분야에 걸쳐 있으나 그것이 현실적 事物에 適用될 때 반드시 고정적, 一律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예는 많다. 價値의 역사적, 人間的 제약성이 法則의 관철이나 強弱의 기능을 多樣化하기 마련이다. 그 점 따져보면 不合理한 사회적 慣行이나 習俗 또는 대상의 환경에도 관계되

나 自然科學上의 여러 法則과는 다른 人爲性이 뚜렷하다. 그중에 資本制 市場의 政策的 規制나 지배적 資本의 “自然的 獨占”은 오히려 보편화한 市場의 歪曲요인이다. 사실인즉 그저, 資本制 自由市場의 完全競爭을 전형적 基반으로 상정함에 自然法則의 本性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 경제는 그점을 확연히 辨別하기에 너무나 복잡하다. 앞서서도 言及한 世界市場의 動態나 景氣變動의 進行 過程을 보는 것과 같은 예이다.

현실적으로 經濟法則이라 하면 단순한 自然法則보다는 人爲的 規制나 또는 사회적 履行이나 景氣政策은 고사하고, 混合經濟의 總體적 複合型이 아닐 수 없다. 그 가운데 경제적 ‘自然性’이 특출한 예와 그것의 ‘變則性’이 보다 뚜렷한 것이 구분되게 마련이다. 價値法則이나 自然價格은 바로 전자의 전형적 소산이며 후자로는 ‘말사스’의 人口法則이나 收穫遞減 등의 특례도 다기하다. 利潤率이나 剩餘價値率 등 역시 바로 전자에 속한다 할 수 있고, 반면에 需要供給의 동태적 法則은 좀 더 후자의 人爲的 범주라 할 만한 예다. 더욱이 土地의 ‘自然的 獨占’에 관한 擬制的인 것도 있거니와 貨幣에 관한 ‘그레삼’(Gresham)의 法則등은 慣習의 기묘한 특례로서 지목되기도 한다. 그것 역시 自然性은 숨어있는 성질의 유형이다. 그밖에도 自然性에는 흔히 短期的인 것과 長期的인 것이 구분되어 이른바 利潤率 低下의 傾向이나 投資의 확대 法則과 같이 進行이 長期化하면 經濟의 內部的 因果關係를 밝히기에 어려운 조건이 추가된다. 반면에 內部的 요인이 ‘變則的’일수록 그것의 成立이나 支配力의 조건은 經濟學의 法則的 대상으로서 解明하기에 어려운 실례이다. 그 중 당면한 資本制 價値法則은 분명히 經濟적 自然法則의 범주로서 객觀化한다. 따라서 그것은 위의 제조건을 고루 극복한 역사적 동태라 할 수 있는 대표적 범주이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각종 법칙은 마찰에 의하여 방해를 받기도 하나 理論上으로는 資本制 生産의 諸法則이 그대로 관철된다고 전제하되, 항상 그저 近似值만이 存在할 뿐이다. 그도 이 近似值는 資本制 生産이 발전할수록 또는 구래의 經濟상태의 殘滓로 인한 資本制 生産의 불순화와 混合性이 제거되면 될수록 더욱 증대한다 [Marx(1894), kapt. 10].

특별히 剩餘價値率의 平均化法則이나 一般 利潤率의 低下法則을 보면 市場 사태는 분명히 ‘自然性’ 이외에 ‘人爲的 支配力’의 개입이 증대된다. 다만 그 ‘人爲的 支配力’ 자체 알고 보면 自由思想이나 市場競爭의 自然性과 밀접히 關聯되어 있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表明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즉

資本은 본래부터 水平主義者다. 모든 生産부문에 있어 勞動의 착취 조건이 平等化됨을 天賦的 人權으로서 요구한다. 그러므로 한 生産부문에 있어서 兒童의 노동에 관한 法的 제한은 다른 生産부문에 대한 제한의 원인이 된다(Marx(1867), kapt. 13).

그리하여 일견 非自然的 現상으로 보인 예에 관하여서도 곧

서로 다른 生産부문에서 보여준 勞動 착취도의 차이는 이미 아담 스미스가 자세히 논의한 바와 같이 모든 현실적 또는 偏見에 관한 相計的 이유에 의하여 平等化하는 것이며, 일반적 관계의 여러 연구를 위하여서는 그저 外觀의이거나 소극적 偏差로서 計算에 들어갈 뿐이다(Marx(1894), kapt. 8).

그 중에도 좀 더 살펴보면 剩餘價値率의 平等化 法則에 비하면 이른바 일반적 利潤率의 低下 경향은 人爲的 조건이 좀 더 구체화된 것임을 구분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資本家의 관심이 후자에 집중되는 것은 必然的인 까닭이다.

물론 資本制 生産樣式의 왜곡이나 變質은 당연히 경제적 自然法則에 대한 제약을 더하겠으나 獨占資本制의 형성 그것이 당장 自然法則의 완전한 소멸을 가져온다 할 수는 없다. 한편 耕作地의 地代와 같은 '自然的 獨占'의 형태 역시 獨占資本制下에 한정된 현상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실제 독점경제 下에 大企業間 경쟁적 市場요인의 개입은 많고, 또는 과도적 獨占市場의 단계에 있어서도 흔히 '自然性'은 숨어있는 현상이다. 그중 資本制 地代의 형성조건으로서 지목되는 '土地所有의 獨占'과 같은 제도적 제약이 당장 自然法則을 파괴한다고 할 수 없는 점, 특히 주목된다. 더욱이 총체적 獨占資本制下 價値法則의 제약이 있다 하되 흔히 그것의 왜곡된 구구한 形態를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

반면에 뚜렷한 人爲的 제약 없는 본래적 自然法則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일시적 교란은 언제나 무시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相計 운동으로서 偏差의 是正을 보게 된다는 점 確率的 동태로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때의 偏差는 대개 特定分布化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단순한 統計理論의 대상으로서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본질적 自然法則의 왜곡이라 할 수도 없으며 경제적 法則性이 관철되는 예이다. 그 밖에 좀 더 살펴볼 때 이러한 市場운동 자체 특수한 自然法則이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식상 모든 經濟法則은 처음부터 確率的 法則으로서 상정할 수도 있다. 이 점, 이른바 不確實性을 뜻하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일반 法則이라 하면 본래 確定的이며 그것의 구체적 발로 형식이 確率的 誤差와 더불어 존립하는 상태로 內在한다. 따라서 價値理論上, 통계적 商品集團의 母數인 自然價格=生産價格은 常數로서 인정된 가운데 그로부터 추출된 標本(集團)의 市場

的 生産價格이 언제나 母數에 대한 確率誤差로서 相計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 밖에 總價値=總價格 또는 總剩餘價値=總利潤의 명제 역시 곧 價値의 轉化를 立證한 근거로 규정할 수는 없고, 사실상 그들 결과로부터 우리는 그저 '轉化' 가능성을 檢證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경제적 自然法則인 '價値法則의 특수한 修正'例로서 우리는 國家間的 交易에 관련된 조건을 들 수 있다. 生産力이 높은 나라의 1勞動日이 낮은 나라의 3勞動日의 生産品과 同價格으로 교환되는 경우 또는 同一한 수준의 生産力 사이에 勞動 強度의 차이에 따라서 價値法則의 修正을 볼 수 있는 것은 필연적이다. 어쨌든 價値法則의 修正이란 여기에서는 당장 價値(體化價値)의 全體的(國際的) 市場價値化에 대한 제약을 뜻하고 있다. 그점 아직 '世界的 勞動의 平均의 強度'와 같은 自然的 조건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까닭이다.

4. 經濟的 自然法則의 歷史性

社會科學이 본래 역사적 과학이며, 특히 경제현상 일반이 역사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명제는 새삼 질문할 필요도 없다. 이점은 價値나 價値法則에 관하여 그대로 말할 수 있고, 경제적 自然法則의 기본적 특징으로서 이미 지적된 조건이다. 그것은 바로 主體의 人間이 역사적 存在라는 점에서 당연한 귀결이며, 더구나 近代의 法則成立의 기초적 배경에서 확인된 바 뚜렷하다. 다만 일상적 경제현상을 논의함에 있어서 흔히 숨겨진 당연한 역사적 조건을 일일이 물을 필요는 없을 뿐이다. 그러나 이 점을 逆用하여 일부의 경제理論家는 매양 역사적 理論을 배경하되 특히 당면한 價値法則에 관하여 그 본래적 時代性을 否定함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그 중 근자의 예로서 심지어 "歷史的 轉化問題는 있는가"하는 標榜을 보이기도 하며, 흔히 價値法則에 근대적 성격만을 인정하는 異說을 제기하기도 하는 형편이다. 예컨대 商品의 현실적 生産價格에 대응한 資本制 時代와 그 以前인 單純商品生産의 時代를 區別하지 않거나, 후자에서 보인 平均利潤 없는 價値=價格 관계의 時代的 發展과정을 당장 현실로서 보지 않으려 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들은 단순한 제약된 歷史觀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경제적 自然法則의 時代的 特性을 굳이 묻지 않으려는 價格形成論에 相通하는 소견일 뿐이다[Morishima and Catephores(1978), chapter 7].

물론 한 예로서 價值的 '轉化問題'에 限하여 역사성을 무시한다 하여도 구구한 理論이 설 수는 있다. 그것 역시 어차피 역사적 諸論에 기점을 둔 價值的 價格轉化論, 따라서 勞動價値法則의 역사적 의식 없이 논의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것은 분명히 資本制下의 生産價格과 그 自然性을 묻게 한다. 따라서 일단 다음과 같은 命題는 실로 이들 學說에 관하여 기초적인 反論이 되지 않을 수 없는 文面이다. 즉

價値와 같거나 또는 近似的으로 같은 諸商品의 交換은 資本制 발전의 一定한 수준을 요구하는 生産價格에 의한 交換보다는 훨씬 낮은 한 단계를 요구한다. 서로 다른 諸商品의 價格이 당초 어떻게 서로 確定되거나 규제되든간에 價値法則은 諸商品의 價格을 지배한다. …… 따라서 價値法則에 의한 價格이나 價格운동의 지배는 물론이고, 諸商品의 價値를 그저 論理的으로뿐 아니라 歷史的으로도 生産價格의 先行者 (das Prius)로 보는 것은 지극히 적절하다. 이러한 관계는 生産手段이 勞動者에 속해 있는 여러 상태에 있어서도 해당되고, 그러한 상태는 古代世界나 近代世界에서도 발견되며, 自己勞動에 의하여 土地를 所有하는 農民이나 手工業者의 경우에도 발견된다 [Marx(1894), kapt. 10].

그밖에 利潤率의 傾向的 低下法則만을 본다 하여도 본래의 商品市場을 통하여 工產品價格의 低下운동이나 勞動價値의 低下운동이 併行함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는 정지된 활동이 될 수 없다. 역사적 현실은 실로 뚜렷한 過程이다. 따라서 價値나 價値法則, 나아가서 '轉化問題' 등을 資本制 市場경제에 限定시켜 보거나 그저 어떠한 理念的 推想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점도 자명하다. 그 중 특히 資本制商品生産과 單純商品生産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거나 그러한 구체적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견해는 너무나 독단적이다. 그 점 다음과 같은 역사적 현실로서 다시 反證될 뿐이다. 즉

競爭이 우선 하나의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시기는 商品이 개별적 價値로부터 同一 市場價値와 市場價格의 成立을 볼 때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부문에 있어서 諸資本의 競爭은 필경 서로 다른 諸부분의 利潤率을 均等化시키는 生産價格을 成立시킨다. 후자를 위해서는 전자의 경우보다는 資本制 生産樣式의 보다 높은 발전을 필요로 한다 [Marx(1894)].

무엇보다 '價値法則'의 歷史的 특성은 바로 경제적 自然法則의 특성이며, 生産관계의 世界史的 현실은 이를 立證하고 남음이 있다. 이른바 '리카도'의 比較生産費說 역시 국제적 價値法則인 경제적 自然法則의 속성을 갖지만 그 자체가 比較生産量의 減退경향을 내포하는 역사적 법칙인 점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5. 自然法則의 檢證問題

5.1 價値法則의 檢證方式

경제적 自然法則의 전형적 속성인 價値法則을 볼 수 있게 된 우리는 이 法則의 存立性 여부를 다시 묻는다 하여도 경제학의 범주에서 당장 그것의 自生기구를 海명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이미 본 바와 같이 1차적으로 資本制 全體의 社會價値의 分배된 商品別 價値가 市場價格으로 轉化(transformation)되는 과정을 暗中 모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法則 그것의 必然的 存立性을 전제해 놓고 總價値=總價格의 眞僞여하를 檢證해 볼 수는 있다. 그것은 당장 標本的 商品에 의하여 母集團의 특성, 즉 母數의 推定 또는 檢定을 倂함과 같은 문제이다. 거기에 不確實性은 다르게 마련이나 어쨌든 그와 같은 自然法則의 眞僞를 가리는 檢證은 經驗科學 일반에서 通用되는 필수적 방법이라 할 수밖에 없다. 당면한 價値의 價格化를 뜻하는 法則의 確認 역시 바로 그러한 범주이다. '마르크스' 경제학의 中心的 과제인 轉化論證 역시 바로 같은 예라는 점, 이미 살펴본 바와 같거니와 그럼에도 오늘날 일부 경제學界에 自然法則 일반의 存立 그것을 人爲的으로 추구하는 데 집착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 말하자면 주어진 價値法則의 內容인 轉化기구의 形成에 관한 因果性을 굳이 직접 對象으로 분석·海명하는 태도이다. 유명한 '보르트기빗치'의 聯立方程式 體系나 逐次修正法은 이 과정에서 보인 대표적 예라 하겠으나 알고 보면 그 방식들은 스스로 價値法則의 檢證法에 속해 있다. 이는 실로 이미 母數인 價値의 자연적 價格化로서 인정된 自然價格을 外面한 體化價値의 生産價格化를 人爲的으로 꾸며보는 요령, 즉 價値=價格을 數量的으로 定式化하려는 소행일 뿐이다. 그러므로 결국 그들 論者의 轉化海명이란 당면한 自然法則인 價値法則을 전제하지 않고, 당장 市場의 표本적 商品의 生産價格을 이용하되 計測된 體化價値와의 一致조절을 數式的으로 모색함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거기에 價値의 價格에 대한 先行性은 있을 수 없고 그저 기준 없는 數値의 等式化만이 목표로 주어져 있을 뿐이다.

價値法則 그 자체의 成立기구를 애당초 밝히는 因果관계라면 전체 市場은 均衡적 현상으로 되어 있는 만큼 轉化의 요구란 있을 리 없다. 그간에 價値無用論이 나올 법도 하다. 한편, '마르크스' 또한 그들 素朴한 平均分析에 의한 生産價格의 價値化로 例示함에 그친 예로서 『資本論』상의 檢證的 海명 역시 다음과 같다. 즉

資本의 中位的 또는 平均的 구성, 즉 완전히 近似的 또는 社會的 平均資本의 구성

을 갖는 生産부분에 있어서는 生産된 諸商品이 화폐로써 표시된 그들 商品의 價値와 완전히 또는 近似的으로 일치한다. 競爭은 각 부문별 生産價格이 이들 中位的 部문의 生産價格이 되도록 사회적 資本을 각종 부문에 분배한다. 이 때 平均利潤率이란 곧 그 中位的 구성부문, 즉 利潤과 剩餘價値가 일치되는 부문에서 比率的으로 계산된 利潤이다[Marx(1894)].

그러나 中位的 推定の 價格 그것이 당장 母數的 生産價格=自然價格을 뜻한다고 보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막연하다. 현실적 計算의 대상인 商品標本으로서의 매양 限定될 수밖에 없는 資料일 뿐이다. 따라서 설령 대규모 商品의 平均利潤率이라 하여도 그것이 일종의 均衡値를 뜻할 뿐 정작 想定된 母數 그것을 뜻할지 의문이 뒤따른다. 어차피 그것은 필경 統計理論上的 期待値를 뜻하는 경우이지만 그것도 確率的 大數의 法則(the law of large numbers)에 근거하여 추상한 것일 뿐, 確定的이 아님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결과는 처음부터 기준적 母數와 標本値의 구분이 주어져 있지 않은 만큼 價値의 價格(生産價格이나 平均利潤)에 대한 先行的 특성이 스스로 배제된 相互관계의 근사적 檢證과정일 뿐이다.

사실, 『資本論』이 轉化문제를 例示함에 있어서 대상인 標本的 産業의 數的 규모나 價値 計測의 限界性은 고사하고, 價格과 名目を 달리하는 價値의 母數的 特性을 明示하지 않은 점, 큰 약점으로 지목된다. 그것은 분명히 同書刊行時 統計學的 水準이 未及했던 소치라 하겠으나 그럼에도 同書 제3권이 일찌기 自然法則의 特性을 價値의 價格轉化에 대한 數量的 先行性에서 찾았던 점은 일단 수긍된다. 예컨대

제1권과 제2권에서 우리는 다만 諸商品의 價値만을 다루어 왔으나 지금은 한편에서 그 價値의 일부로서 費用價格이 분리되고, 다른 한편에서 價値의 한 轉化형태로서 商品의 生産價格이 전개된다.

하였고, 더욱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文面은 각별히 볼 만하다. 즉

需要와 供給은 價値의 市場價値에의 轉化를 전제한다. …… 그것은 資本制의 여러 生産과정들, 따라서 諸商品의 단순한 매매와는 전혀 다른 여러 관계를 전제한다. 이들 관계에 있어서 商品價値의 價格에의 형식적 轉化, 즉 단순한 形態變化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市場價値로부터 또는 나아가서 生産價格으로부터 市場價格의 특정한 量的 偏差이다[Marx(1894), kapt. 10].

따라서 지금 ‘體化價値의 市場價値에의 轉化’ 문제에 있어서 이른 바 위의 偏差란 곧 價

值法則의 母數와 標本值간의 確率的 偏差를 뜻함에 틀림이 없다. 이 점 그것이 당장 自然法則인 價値法則의 內在性을 시사하되 그것의 확정은 檢證이 요구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필경 '轉化'에 관한 문제의 요점인즉, 資本制 價値法則의 存立性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 본 바와 같이 資本制 市場경제의 必然的 운동인 價値와 價格의 自生的 조건을 간과한 데 있다. 어쨌든 그러한 조건을 떠난 極限值 法則에 의하여 數學的 近似值를 얻는다 하여도 價値의 價格化, 즉 轉化의 확정이란 목적에는 도달할 수 없는 방식이다. 그것도 당장 一意的인 것이 아닌 檢證의 결과일 뿐, 그로부터 自然法則으로 인정되는 價値=價格의 定式化를 기할 수는 없다. 즉 價値의 轉化란 價値法則에 관한 母數와 標本值란 前提 없이 極限值의 개념만으로서는 결코 有效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면 너무나 단순한 예이지만 지금 生産價格(=費用價格+平均利潤)의 自然法則의 成立을 전제한 다음에 그 量的 檢證을 피하되 價格구성인 平均利潤의 形成關係를 우선 확인해 본다고 하자. 당면과제는 곧 한 社會의 全體의 商品 또는 企業別 商品 集團을 독립화함으로써 自由競爭의 市場에서 형성된 總利潤의 實體인 總剩餘價値의 商品別 分配量의 期待值를 보는 요령이다. 그 중 단순히 M 單位の 總剩餘價値量 가운데 同種 N 개 商品에의 分配 利潤인 x 단위의 기대치 $E(x)$ 를 구할 때 위의 市場에서 總配當價値 $W_N(M)$ 가지 가운데 한 商品의 配當은 $W_N(x) = W_{N-1}(x)$ 가지이므로 x 의 확률은 정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다. 즉

$$(5.1) \quad P(x) = \frac{W_{N-1}(M-x)}{W_N(M)}$$

그런데 식 (5.1)에서 분모는 당연히 분자의 N 개 합사로 될 것이나 그들은 각기 다음과 같이 數理的으로 分解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각각

$$(5.2) \quad W_N(M) = \frac{(M+N-1)!}{(N-1)!M!}$$

$$(5.3) \quad W(M-x) = \frac{(M+N-x-2)!}{(N-2)!(M-x)!}$$

이며, 식 (5.1)은 결국 다음과 같다. 즉

$$(5.4) \quad P(x) = \frac{(M+N-x-2)!(N-1)!M!}{(M+N-1)!(N-2)!(M-x)!}$$

$$= \frac{(N-1)M(M-1)\cdots(M-x+1)}{(M+N-1)(M+N-2)\cdots(M+N-x-1)}$$

여기에서 N 은 1보다 훨씬 크고, x 는 M 보다 훨씬 작은 수일 것이 일반적이므로 1 및 x 가 생략됨으로써

$$(5.5) \quad P(x) = \frac{N}{M+N} \left(\frac{M}{M+N} \right)^x$$

로 되고, 總平均利潤率 $M/N=r$ 과 더불어

$$(5.6) \quad P(x) = \frac{1}{1+r} \left(\frac{r}{1+r} \right)^x$$

로 단순화한다.¹⁾ 그러므로 $\sum P(x) = 1$ 에서 미분의 공식에 의하여 期待值

$$E(x) = \sum xP(x) = \frac{1}{1+r} \sum x \left(\frac{r}{1+r} \right)^x = r$$

로 주어진다. 이 점 곧 x 의 期待值는 母平均利潤率을 뜻한다는 결론이다.

한편 生産價格(p)은 費用價格(k)과 平均利潤 $E(x) = r$ 으로써 구성되고, 이들은 당연히 독립적이므로 期待價格

$$(5.7) \quad E(p) = E(k) + E(x)$$

로 표시된다. 즉 (5.7)식은 商品의 自然價格인 본래의 生産價格 역시 平均的 費用價格과 社會的 平均利潤으로 분해된다는 표현일 뿐이다.

물론 위와 같은 결과는 응당 諸商品의 價値에 의하여 價格이 결정된다는 전형적인 價値法則의 기초 위에 성립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식 (5.7)이 生産價格=自然價格이란 명제의 反證이 된 셈이다. 더욱이 이때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명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非本質적이고 偶然的으로 相計될 만한 偏差를 제외한다면 각 産業부문의 平均利潤率

(1) M, N 이 無限大인 경우 식 (5.6)은 正確하다. 그 밖의 證明例는 久保亮五(1951, pp. 12-19) 참조.

의 차이는 현실적으로 없고 또한 資本制 生産樣式의 全體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는 없다[Marx(1894), kapt. 8].

어차피 주어진 개별적 生産價格下에서 費用價格이 일정한 平均利潤率과 더불어 平等化 될 수밖에 없거니와 『資本論』 또한 이 점을 여실히 해명하고 있다. 즉

개별적 生産부문에 있어서 같은 크기의 資本支出의 경우는 生産된 價値와 剩餘價値 (따라서 不變資本과 可變資本 — 註)가 아무리 不平等하더라도 費用價格은 같아진다. 이 費用價格의 平等性이 平均利潤을 出現시키는 諸投資간의 競爭의 기초를 이룬다 [Marx(1894), kapt. 8].

이 또한 분명히 價値法則의 必然的 속성과 더불어 경제적 自然法則의 體系的 市場기반을 해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위의 분석은 價値法則의 存立性を 檢證하는 방식의 이론일 뿐 그 자체가 아직 規定된 自然法則의 成立을 實證한 결과라 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서 實證方式은 적어도 다시 구체적 통계자료에 의하여 商品別 市場價値와 市場價格의 一致상태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때에 大數의 法則에 따라 많은 양의 자료를 비교·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때 市場價値의 본래적 非計測性이 문제라 하겠으나 실제로 商品別 體化價値를 떠나 그들의 總計化(平均化)한 勞動時間의 貨幣化와 總體化한 商品價格과의 等式을 끝까지 찾는다면 價値=價格을 전제하는 한 檢證法의 實證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작업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5.2 諸法則의 檢證과 合理性

경제학에서 合理性이란 흔히 私企業의 입장에서 效用의 極大化나 費用의 最小化를 말하기도 하지만 自然的 또는 人爲的 衡平原則이나 장래에 대한 자유로운 個人的 自己規範의인 개념으로도 쓰여진다. 資本制下의 경제적 自然法則이 그러한 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일단 전제되는 명제이다. 그럼에도 문제의 理解에 있어서 自然法則의 관철이나 그것의 객관적 檢證방법이 아직 의외로 非合理的 요인의 混入을 보이는 예는 사실상 적지 않다. 사회적 慣行이나 習俗에 기인할 수도 있거니와 순수 論理的인 것으로 보이는 數學的 應用에 있어서도 흔히 主觀的 요인의 不合理한 技術的 개입이 수반되는 것이 현실이다.

앞에서 우리는 價値法則의 檢證을 위한 몇 가지 방법론에 걸쳐 확률적 計測형식을 도입한 바 있었으나 알고 보면 確率이란 개념 자체도 반드시 객관적 合理性을 언제나 관철시키는 도구일 수 없다. 비근한 경우로서 어떠한 사실의 經驗的 確率, 1.0, 0.8, 0.6 사이

의 차이에 관한 사실을 비교할 때 접근 事象의 出現差는 각각 0.2로 판정됨에도, 실질적 成果가 사실상 언제나 그렇게 판정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그 중 우선 1.0 이란 확률은 바로 100% 정확함을 뜻하는 만큼 이들 확률 사이의 차이를 그저 0.2란 差로서 同一視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엿보인다. 따라서 이때의 결과에는 흔히 主體的 요인의 介入이 요구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確率論의 應用에서 당장 不合理性을 보이는 특례로서 역사상 유명한 '베이즈'(Bayes)의 定理를 들 수 있다. 그것이 未知의 事物에 관하여 널리 쓰이는 推理의 用具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거기에 論理의 난점은 오히려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원래 결과적으로 既知의 확률적 요인을 主觀적으로 전제 삼아 事後의 확률적 결과를 判定하는 명제로 인정되는 만큼 처음부터 難點은 뚜렷하다. 더구나 그것의 確率的 結果가 복잡한 사실에 그대로 응용될 때 결과에 미치는 否定性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精密度를 요구하는 計量的 분석에 있어서 逆效果가 加重되는 것이 例證되는 난점이다.

사실, 근자에 이른바 合理的 期待(rational expectation)理論이라든가 '게임'理論(game theory)과 같은 발전된 분석에 있어서도 따져 보면 '베이즈'定理에 입각한 主觀的 事前情報의 개입은 불가결한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意思決定(decision making)論 일반에 있어서 同定理에서의 事前確率は 넓은 범위에 걸쳐 항상 通用되는 문제의 요인이다. 참고로 이들의 가장 단순한 數學的 檢證例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그것에 대해서도 물론 추가적 해명이나 合理的 調整의 대안이 요구된다. 지금 같은 종류의 A, B, C 3개 상자에 들어 있는 일정形인 物體의 既知의 數를 想定하고, 각기 比率적으로 따져서 0.3, 0.2, 0.5라 하되 無作爲로 하나의 목표物體(M)를 뽑았다고 할 때 그것이 상자 A로부터 抽出되었을 確率(事後確率) $P(A|M)$ 이 얼마인가를 計算해 보자. 이때 選出前 상자의 出現確率(事前確率) $P(A)$ 를 알아보면 그것은 미리 제시된 바 없으므로 主觀的 判斷에 의하여 부득이 1/3로 정해 놓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 다른 상자 또한 마찬가지로 구하는 事後確率, 즉 事前確率을 既知의 조건과 더불어 修正한 結果로서의 그것(事後確率)은 확률의 定義에 의하여 곧

$$\begin{aligned}
 P(A|M) &= \frac{P(M|A) \cdot P(A)}{P(M|A) \cdot P(A) + P(M|B) \cdot P(B) + P(M|C) \cdot P(C)} \\
 &= \frac{0.3(\frac{1}{3})}{0.3(\frac{1}{3}) + 0.2(\frac{1}{3}) + 0.5(\frac{1}{3})} = 0.3
 \end{aligned}$$

으로 표시된다. 이것이 '베이즈'定理(公式)의 골자이지만 이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하나의 경제적 計算例로서 輸出의 경향성(법칙)을 추정해 보자. 이때 만약 한 商品(M)의 3개 相對國(A, B, C)에 대한 현실적 輸出可能性을 평가함에 앞서 그들 나라에 대한 當國의 商品別 輸出統計로서 數年間 平均比率의 實績(Ma, Mb, Mc)과 같은 資料가 事前知識으로서 주어졌다 할 때 今年度에 이르러 A 國에 대하여 기대되는 特定商品(M)의 輸出確率을 合理的으로 묻는다면 어떠할까? 흔히 이용된 計算 방식은 우선 Ma 와 그 밖에 主觀으로 事前確率 $P(A)$ 를 얻고, 다시 全體的 조건하에 구하고자 하는 대상인 금년도 同國의 事後確率 $P(A|M)$ 를 '베이즈'의 公式을 써서 구해보는 방식이 된다. 즉 商品 M 의 各國別 輸出比重을 代表標本으로서 보고 그에 대하여 해당國에의 M 의 輸出確率을 逆算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일종의 條件附 確率로서 다음과 같은 事後確率의 식이 결정된다(다음 식 참조). 따라서 이때는 事前에 A 國에 대한 輸出情報(知識)와 함께 事前確率 $P(A)$ 가 選定되는 형식과 더불어 A 國에 대한 事後確率을 推定하는 條件附 確率 $P(A|M)$ 를 計算한 셈이다. 즉

$$P(A|M) = \frac{P(Ma) \cdot P(A)}{P(Ma) \cdot P(A) + P(Mb) \cdot P(B) + P(Mc) \cdot P(C)}$$

$$= \frac{P(A \cap M)}{P(M)}$$

여기에는 물론 큰 모순성이 드러난다. 그것은 필경 이 식이 數式的으로는 성립이 완전하지만(證明略) 經驗法則上 이는 事前確率 $P(A)$ 와 標本の 選擇의 知識(M)에 의하여 事後確率인 全體(母數的)法則(眞實)을 推定하려는 방식에 해당하는 만큼 분명히 主觀的 結果에 의하여 客觀的 原因을 보고자 하는 난점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물론 '베이즈'定理에 관한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學界의 노력은 각 방면에 일찌기 없지 않았다. 그 가운데 1930년대에 이르러 確率誤差와 誤差分布의 이론에 입각한 '피셔'(R. A. Fisher)의 이른바 假設檢定法이 가장 劇期的인 實效를 거두었다고 보여지나 그것은 요약컨대 거듭 살펴본 바와 같이 無作爲 標本抽出에 의하여 母數를 確率的으로 推定 또는 檢定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그에 이어서 '네이만'(J. Neyman)과 '피어슨'(E. S. Pearson)에 의한 同種의 精巧化 역시 非'베이지안'(non-Baysian)의 입장에서 발전되었다는 사실은, 現代的 推測統計의 이론으로서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다만 이들의 確率的 분석 역시 과연 그 合理性에 있어서 完全無缺한 경지에 이른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고, 적어도 自然法則을 묻는 경제학의 非可測的(추상적) 본성에 비추어 主觀性은 여전히 남아 있

는 문제이다.

그러나 경제적 理論은 고사하고 현실적 문제인 檢證의 객관화를 위하여 과연 既知의 事前確率과 같은 情報나 知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 것인가는 또 하나의 反問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반드시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들 知識 역시 母數의 推定·檢定을 위한 近似值를 얻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면 분명히 응용상 再考는 필요하다. 알고 보면 오히려 근자에 科學일반이 理論的 自己 발전을 활발히 꾀하는 유력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선 이 방면에 유명한 '와르드'(A. Wald)의 통계적 意思決定法이란 것 역시 그러한 主觀모형을 객관화 하려는 代表的 시도이다. 그밖에 구구한 檢證法의 實例는 일일이 들 수 없을 만큼 발전의 방향에 놓여 있다. 다만 그들의 제약된 合理性은 그들 응용상의 效率性과 더불어 언제나 남아 있는 경계의 조건일 뿐이다.

어쨌든 경제적 自然法則을 비롯한 諸理論은 기술적 檢證方式을 따져 본다면 결국 경제학이나 統計的 理論의 전체에 관련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우리는 自然法則의 存立性과 그것의 檢證방식이 별개의 대상적 범주라는 것, 그나마 후자의 檢證에는 人間主體的 또는 각종 非合理的 요인의 介入이 언제나 경계된다는 점, 價値法則의 해명에도 관련하여 명기되어야 한다.

6. 價値轉化의 自然法則의 再考

경제적 自然法則의 存立性은 이미 檢證됨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적 價値法則의 본래적 母數性은 흔히 간과된 채 그대로 남아 있다. 商品의 價値를 무시하거나 自然價格=生産價格의 全體性과 그것의 市場價格에 대한 先行的(一方的) 특성을 잊는 것이 그 예이다. 사실 價値 없이 市場價格의 기준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며, 더구나 그 動態的 파악에 있어서 기준 없는 평가란 있을 수 없다. 商品集團의 價格을 主導하는 中心的 價格, 즉 生産價格의 實體는 人間勞動인 價値이다. 어차피 資本制下 生産價格은 곧 同種 商品의 구구한 體化價値로 하여금 각기 費用價格 이외에 利潤의 均等化를 이룬 개별적 商品의 平均的 價値로서 평가된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市場價値의 別名이다. 그렇다면 이 生産價格의 母數性 그것은 市場의 需要供給에 앞서서 구체화하는 전체 市場의 객관적 속성이며, 동시에 人爲的 價値=價格의 名目이 아닌 理想的 市場價格이 아닐 수 없다. 바로 그것이 경제적 自然法則의 이름과 함께 본래의 기준적 市場價値로서 확인되는 내막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商品別 市場價格의 人爲的 조절에 의하여 計測되는 價値 내지 市場價格의 형성 과정을 이른바 '轉化문제'의 解法으로 착각하는 경향은 근자에 자못 뚜렷하다. 앞에서 거듭 言及한 '보르트키비치'의 聯立方程式 解法이나 逐次修正法이 그 좋은 예이다. 그것들은 그 技術的 내용을 새삼 밝힐 필요도[金俊輔(1996)]없이 自然法則이나 價値法則을 묻지 않는 가운데 價値로 體化된 노동投下量과 價格의 數量的 一致조건을 추구하는 手法의 均衡분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역시 알고 보면 일찍이 '엔겔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論評을 받았다. 즉

資本에 퇴적된 過去의 노동은 일종의 既前 形成的이기는 하나 그 자신이 갖는 것보다 큰 價値의 源泉이 된다고 보는 것과 같은 資本家의 思考에서 유래한 견해에 대해서는 價値法則이 처음부터 배반적이다. 슈미트(C. Schmidt)가 문제의 해결점에 접근하면서도 옆길로 빠져버린 것은 각종 商品의 平均價格과 價値의 一致법칙을 立證할 만한 어떠한 數學的 定式의 발견이 가능하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Engels(1894)].

'마르크스' 역시 주어진 母集團과 標本의 自然法則的 對決 관계를 明示한 바 없다. 그 저 資本의 中位的 또는 平均的 구성을 내세워서 價値의 價格轉化를 "總計一致"로 보았음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商品價値의 生産價格化란 그의 본래적 주장이 바로 『資本論 III』 그대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입증됐다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초의 體化價値는 資本制 市場에서 사회적 市場價値化한다는 점, 본래의 生産價格(=費用價格+平均利潤)은 市場價値=自然價格의 별칭이라는 점, '문제는 단순히 價値의 價格에의 형식적 變化에 있는 것이 아니라 市場價値 또는 生産價格과 市場價格과의 偏差에 있다는 점' 등을 내세운 견해²⁾에서 그의 價値에 관한 母數觀은 오히려 뚜렷하다. 필경 價値 개념은 언제나 價格에 先行한다는 것, 따라서 需要供給의 市場관계에 앞서서 價値는 이미 주어졌 있다는 그의 주장에서 價値法則이란 價値의 母數性과 더불어 주어지는 自然法則이란 점, 새삼 명기되는 조건일 뿐이다.

요컨대 일부 論者의 人爲的 '轉化論'이란 어차피 기준 없는 需要供給의 均衡화 운동에 불과하다. 이때 商品의 價値란 기준적 市場價値가 아니라 주어진 당면한 價格과 더불어 변동하는 개별적 商品의 體化價値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것은 資本制 市場을 의식하지 않은 前期的 勞動價値의 價格函數 개념일 뿐, 價値의 支配力이나 '先行性'이 아직 없다는 점, 각별하다. 요컨대 이들의 '轉化論'인즉 非 현실적 結果로 돌아갈 뿐이다. 그럼에도 新

(2) 이들 견해와 더불어 그의 주장은 『資本論 III』 제10장에서 뚜렷하다.

古典학파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문제에 임하여 精巧한 數理的 분석으로써 목표 없는 自己 목적의 달성을 고집한다. 그 중 특히 '마르크스'의 生産價格式을 修正했다는 '보르트키비치'의 聯立方程式體系(단, 각 價値單位=價格化한 것)의 逐次修正法은 그들을 뚜렷이 대표하는 형식이다. 즉, 이는 多數부문에 관한 價値=價格의 관계식

$$P_i = (1 + r^s)(\sum a_{ij}P_j + V) \quad (i, j = 1, \dots)$$

(단 여기에서 r^s 는 s 차의 平均利潤率, a_{ij} 는 不變資本係數, $V = \sum b_j p_j$ 는 可變資本)

에서 均衡點(解)을 $s \rightarrow \infty$ 의 逐次과정을 진행시킴으로써 구하는 요령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式으로부터 $s \rightarrow \infty$ 의 逐次과정으로 收斂되는 平均利潤率을 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價値의 명목을 價格單位化하는 일도 쉽지 않거니와 이들 調整値를 쉽게 全商品에 걸쳐 合計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보장도 없다. 위 식에서 비록 s 차의 平均利潤率에 관하여 하나의 極限値를 얻을 수 있다 하여도 처음부터 규정되는 기준이 없는 限, 확정되지 않은 計算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母數인 自然價格=生産價格, 따라서 市場價値=市場價格은 어떻게 확인되는가? 거듭 본 바와 같이 '마르크스'의 單一 生産價格式을 직접 轉化實體로 입증할 길은 없다. 얻게 되는 것은 본래 경제적 自然法則으로서 成立하는 理想的 母數일 뿐, 조정된 轉化式이 아니라는 점, 명기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남은 문제로 轉化를 전제한 가운데 經驗的 資料에 의하여 경향적 價値法則을 檢證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곧 價値와 價格의 偏差를 相計시킬 수 있는 母數의 확인방식과 같은 예이다. 이 점 필경 多數 商品의 市場價値=生産價格과 市場價格의 一致조건을 통계적으로 추구하는 요령이다. 그렇다면 결과는 일견 人爲的 檢證法에서와 같을 것도 같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自然的 市場價値란 그 본성이 計測不能인 만큼 總計의 一致의 방법만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로써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價値法則의 檢證法이다. 어쨌든 본래의 '轉化'기구는 價値와 價格의 形態의 變化가 아니라 自然法則의 속성으로서 價値의 先行性을 전제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문제는 주어진 市場價値 또는 生産價格과 市場價格(市場의 標本的 生産價格)간의 偏差(誤差)에 있다는 점, 거듭 확인될 뿐이다.

모름지기 自然法則의 合理的 檢證法이라 하여도 매양 완전무결하지는 못한 限界性은 뚜렷하다. 그것의 精度와 正確性의 추구 문제 또한 自然法則 또는 價値法則의 存立性과 더불어 재인식이 요구되는 대상이다. 우선 이들 본성은 확률적이지 않다. 거듭 본 바와

같이 그들 法則 자체는 資本制下 先驗的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까닭이다.

참고로 『資本論』이나 그 밖의 저술에 있어서 흔히 中位的 또는 平均的이란 用語가 사용되지만 넓은 의미의 平均 분석으로 算術平均이 通用될 만한 이유는 있다. 경우에 따라서 中位數, '모드'(最頻值) 등도 널리 쓰여질 수 있고, 특수한 경우 幾何平均이나 調和平均 또는 이들의 混合의 산식에 의존하는 것이 合理的일 수 있음도 사실이다. 다만 그 중 算術平均의 精度(效率性)에 관한 한 특히 우월함은 새삼 논의할 필요도 없으나 그 자체 경험적 法則性이 아니다. 순수한 '絶對的' 法則性이 되겠으나, 다만 경제적 自然法則을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데 항상 높은 效率性을 보인 수단일 뿐이다.

7. 結 論

본고는 경제적 自然法則의 특징을 주로 價値法則으로서 재인식하되 그것이 바로 近代의 產物로서 資本制 生産기구의 市場경제에서 주어진 필연적 존재란 것, 그에 의한 轉化의 대상인 生産價格 역시 현실적 市場에서 自生이 기대되는 自然價格으로서 市場價値를 반영하는 母價値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市場價格에 先行한 不可測의 요인인 동시에 市場價格을 지배하는 기준적 價格=價値라는 점을 檢證한 셈이다. 그럼에도 흔히 이른바 經濟分析이란 것이 경제적 自然運動을 오인한 나머지 法則成立의 과정을 밝혀본다 하되, 실은 그것의 특성을 檢證하는 작업에 급급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法則의 存在자체는 분석에 있어서 일단 전제된 조건이라는 것, 더욱 그 存在의 檢證方式에는 自然法則에 내용하는 合理性이 주어져야 마땅하다는 점이 여기에서 강조된 결론이다. 이 점은 다만 경제적 自然法則에 限定되지 않는 經驗科學 일반에 걸친 方法論의 요구이기도 하나 이른바 價値의 無用論이나 價格 '轉化問題'를 논의함에 있어서 각별한 인식의 기점이 되어 있다. 價値 그것은 정작 人間 사회와 物質的 세계를 연결시키는 自然的, 그리고 物神的 요인임에 틀림이 없으며, 본래 人爲的 소산이 아닌 까닭이다.

學術院 會員, 前 서울大學校 教授

427-040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APT 501동 903호

전화: 502-8336

參考文獻

(年代順)

Marx, K.(1867): *Das Kapital* I.

Marx K.(1894): *Das Kapital* III.

Engels, F.(1894): *Das Kapital* III, Vorwort.

Weber, M.(1922): *Wirtschaft und Gesellschaft*.

Sweezy, P.(1943):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Bortkiewicz, L. V.(1949): *On the Correction of Marx's Fundamental Theories*.

久保亮五(1951): 『統計力學』.

Samuelson, P.(1971): "Understanding the Marxian Notion of Exploitation: A Summary of the So-Called Transformation Problem between Values and competitive pric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Jun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March, 1974.

Morishima, M., and Catephores, G.(1978): *Value, Exploitation, and Growth*.

金俊輔(1996): 『價值斗 價格轉化論』, 非賣品.